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020년도 세입 ·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입 · 세 예 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881,408,829	26,442,265
일반회계	858,197,343	25,745,920
특별회계	23,211,486	696,34
기타특별회계	23,211,486	696,345
주차장특별회계	19,515,943	585,478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370,977	41,129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,960,034	58,801
기반시설특별회계	336,000	10,08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8 532	856

제 2 조 세입 ·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 · 세출예산'과 같다.

제 3 조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.

제 4 조 2020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해당없음.

제 5 조 2020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6 조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는 해당없음.

제 7 조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(1)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과목 (2) 공공요금 및 제세

※ 예산서 재원표기
[국] 국고보조금, [균]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, [기] 국가 금보조금, [시] 시비보조금
[특] 특별교부세, [교] 특별조정 부금, [구] 자체재원, [채] 지방채